

제 214 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2015.12.11.)

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최인식]

목 차

| | | |
|---|----------------------------------|----|
| 1 |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 |
| 2 | 거창 향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20 |

〔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12.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12. 17.

2. 특구 해제신청(개요)

- 명 칭: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영문) Geochang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Special Zone
- 특화사업자: 경상남도 거창군
- 위 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300번지 외 89필지
- 사업기간: 2005 ~ 2015년 12월 말
- 지 정 일: 2005. 12. 31.(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4호)
- 소요예산: 165억원(국비 63, 군비 100 민자 2)
 - '09년까지 지특회계보조, '13년부터 국비 중단, '14년부터 100% 전액군비)
- 특구면적: 206,885㎡
- 주요단위 사업
 - ① 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 ②영어캠프 ③영어학습센터운영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2가지 특례적용 분석

| 특구법상 규제특례 | 특구법상 규제완화 주요 내용 | 교육청 규제특례 운영 현실태 |
|--------------------------------|--|--|
| 특구법 제 19 조 제①항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외국인의 외국어 교원(강사) 임용시 자격기준 완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 · 외국인 강사 임용 시 경남도 교육청 기준 준용 -도기준:교육학전공,태솔 자격보유 등 심사 -특례적용 없이도 우수한 외국어교원 확보 운영가능 |
| 특구법제20조제①항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외국어 교원(강사) 사증(비자) 발급시 체류기간 완화(2년⇒3년)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0조」 (사증, 체류자격) | · 매1년마다 자격 및 활동 평가후 재계약하는 실정 으로 특례적용 실익 의미 없음(1년마다 비자 갱신) · 또, 개인사유로 재계약 포기 |

※ 주: 태솔(Tesol)은 영어교육 교사자격증(미국, 캐나다)

○ 외국어 교육특구는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않아도 특구 운영에 지장 없음.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관한법률」(안전행정부 제정정책과, 2013. 10)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충당하는 지자체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거창군 외 다수)
- 현재 국비가 지원되지 않지만 원어민 강사, 장학제도, 「교육도시 거창」 정책사업에 재정지원은 중단 없이 추진

○ 해제사유

- '15년 12월 말 특구기간 종료, 목적달성, 규제특례 활용 의미 없음.
- 교육특구는 전국 지역특성 공동화로 분류되어 특구 명예 졸업제도 권장

3. 추진경과

가 주민공청회 의견청취(개요)

- 일시: 2015. 12. 11.(금) 14:00 ~ 15:55(1시간35분)
- 장소: 군청 대회의실(4층)
- 대상: 80여 명(주민, 초·중등 학교장, 교육청관련자,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해제에 대한 설명
 - 특구계획 및 해제(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개진
- 개최결과(의견 개진):
 - 교육특구가 해제되면 원어민 강사가 줄고, 영어 학습 중단 위기 걱정
- ⇒ 외국어 교육특구가 해제된다고 하여서 원어민 강사 등 교육 관련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님. 특구 해제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설명

나. 간담회 개최

- 일시: 2015. 12. 11.(금) 15:00~
- 장소: 문화관광과 사무실 내
- 대상: 11여 명(학교장, 교사, 관련공무원 등)
- 주요내용
 -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추가 의견개진 및 대책 협의
 - 향후, 원어민 강사지원은 장학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청과 협의체 구성 후 계속지원 검토 등

4. 향후계획

- '15. 12. 14.~12. 22.: 군의회 의견청취(일반안전 제출 및 승인)
- '15. 12. 31.: 중기청 해제 및 지정 신청
- '16. 2.~3.: 중기청 안전상정 및 승인
- '16. 3. 이후: 관보 및 지형도면 고시, 주민 열·공람

5. 검토의견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및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특구의 지정 및 신청 시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는 2005.12.31.(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4호)로 2015년 12월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그동안 특구법상 규제완화 내용인 외국인의 외국어교원 임용 시 자격기준 완화는 경남도 교육청 기준을 준용 특례 적용이 없이도 우수한 외국어 교원 확보 운영이 가능하고, 외국어 교원사증(비자)발급 시 체류기간 완화(2년⇒3년)는 매 1년마다 자격 및 활동 평가 후 재계약하는 실증으로 특례적용의 의미가 없는(1년마다 비자 갱신) 등 외국어 교육특구는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않아도 특구 운영상 지장이 없으며
- 특구폐지에 따른 폐지안 공고, 주민공청회,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사항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6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구계획안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 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추가되는 특례조치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3장제2절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다르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교원의 자격)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임용 예정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교육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칙

제11조(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법 제21조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초등학교 교사과정: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2. 특수학교 교사과정: 특수학교 정교사(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3. 특수학교 관리자과정: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개정 2013.3.23>

교사 자격 기준 (제21조제2항 관련)

| 자 격 학 교 별 | 정교사(1급) |
|--------------|---|
| 중 등 학 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 초 등 학 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 특 수 학 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 자 격 학 교 별 | 정교사(2급) |

| | | | |
|---------|---|------------|------------|
| 중 등 학 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敎職科) 학점을 취득한 사람 6.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초 등 학 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2.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7.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 | |
| 특 수 학 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6.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 |
| 학 교 별 | 자 격 준 교 사 | 전문상담교사(1급) | 전문상담교사(2급) |

| | | | | | | | |
|----------------|---|---|--|------------------|------------------|------------------|------------------|
| <p>중 등 학 교</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 학위 과정만 해당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 | | |
| <p>초 등 학 교</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 | | | | | |
| <p>특 수 학 교</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 | | | |
| <p>자격</p> | <p>사서교사 (1급)</p> | <p>사서교사 (2급)</p> | <p>실기교사</p> | <p>보건교사 (1급)</p> | <p>보건교사 (2급)</p> | <p>영양교사 (1급)</p> | <p>영양교사 (2급)</p> |

| 학교별 | | | | | | | |
|----------------------|--|---|---|--|---|--|--|
|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 <p>1.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p> <p>2.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p> | <p>1.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p> <p>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사람</p> <p>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4.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p> | <p>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란(欄)에 서 같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實科系)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p> <p>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p> <p>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p> <p>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p> | 보 건 교 사 (2급) 자 격증 을 가 진 사 람 으 로 서 3년 이 상 의 보 건 교 사 경 력 을 가 지 고 자 격 연 수 를 받 은 사 람 | <p>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p> <p>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p> | 영 양 교 사 (2급) 자 격증 을 가 진 사 람 으 로 서 3년 이 상 의 영 양 교 사 의 경 력 을 가 지 고 자 격 연 수 를 받 은 사 람 | <p>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p> <p>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 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같은 수준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장·원감의 경력연수(年數)는 교육경력연수(年數)로 볼 수 있다.
3.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중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가 포함된다.
4.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그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중 6. 일시취재(C-1) 부터 31. 방문취업(H-2)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을 법무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0.15> [전문개정 2011.11.1]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7.1]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12조 관련)

| 체류자격 (기 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
| 1. 외 교(A-1)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
| 2. 공 무(A-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
| 3. 협 정(A-3) |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
| 4. 사증면제(B-1)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
| 5. 관광·통과(B-2)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
| 6. 일시취재(C-1) |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 7. 삭제 <2011.11.1> | |
| 8. 단기방문(C-3) |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9. 단기취업(C-4) |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 10. 문화예술(D-1)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
| 11. 유 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 12. 기술연수(D-3)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
| 13. 일반연수(D-4)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14. 취재(D-5)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또는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 | |
|----------------|---|
| 15. 종교(D-6)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과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 16. 주재(D-7) | <p>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다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 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p> <p>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
| 17. 기업투자(D-8) | <p>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p> |
| 18. 무역경영(D-9)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18의2. 구직(D-10) | <p>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
| 19. 교수(E-1)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 | |
|---------------------|---|
| 20. 회화지도(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 21. 연구(E-3) |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22. 기술지도(E-4) |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
| 23. 전문직업(E-5)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24. 예술흥행(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 25.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 25의2. 삭제 <2007.6.1> | |
| 25의3. 비전문취업(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 25의4. 선원취업(E-10)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 26. 방문동거(F-1) |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

| | |
|----------------------|---|
| | <p>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p> <p>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영주(F-5) 가목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p> <p>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
| <p>27. 거 주 (F-2)</p> | <p>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p> <p>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p>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p> <p>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p> <p>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 | |
|------------------|---|
| | <p>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p> <p>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p> <p>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p> <p>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
| 28. 동 반 (F-3)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28의2. 재외동포 (F-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 28의3. 영 주(F-5) | <p>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p> <p>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p> <p>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

-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카.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 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하. 거주(F-2) 차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 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너.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공청회 개최 사진



○ 주민공청회 시 최종승 문화관광과장 설명



○ 주민공청회 시 용역회사 ppt 설명

□ 간담회 개최 사진



○ 최종승 문화관광과장 공청회 개최 후 과내 사무실에서 간담회 주재 광경



○ 공청회 개최 후 과내 사무실에서 초중등교장, 교사, 예산담당, 평생교육담당, 문화재담당, 용역회사 간담회 추가 토론장면(10여 명)

거창 향노화 힐빙(休·건강·장수)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12.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12. 17.

2. 특구신청 개요

- 신청배경: 우리 군의 지역특화 요소인 온천, 청정산림, 산양삼, 창포, 오미자, 약용작물 등 농·특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하여 힐빙 건강도시 기반조성으로 한 향노화 힐빙(休·건강·장수) 바이오산업 특구지정으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함.
- 명 칭: 향노화 힐빙(休·건강·장수) 바이오 산업특구)
- 위 치: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0번지 외 1,443필지 (특구면적: 8,076,105m²)
- 사업기간: 2016~2020(5년)
- 소요예산: 69,727백만원
- 주요과제: 3개 추진과제 18개 특화사업
 - 향노화휴양체험거점화사업(5), ②향노화생산유통기반구축(5)
 - ③ 건강도시거창브랜드강화(8)
-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 규제특례: 붙임

3. 추진경과 (주민공청회개최)

- 일시: 2015. 12. 11.(금) 14:00~ 15:55(1시간55분)
- 장소: 군청 대회의실(4층)
- 대상: 80여 명(주민, 교육청관계자, 해당사업 관련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거창 향노화 힐빙 바이오산업특구 지정 및 계획(안) 설명
 - 특구계획 및 해제(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개진
- 공청회장 의견
 - 거창군은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6%로 산지이용 농가 소득 증대방안과 경남 미래 50년 성장사업으로 지정에 있어 과제가 포괄적인데 어떤 사업 위주로 발전하게 되는지 등

4. 향후계획

- '15. 12.14.~12.22.: 군의회 의견청취(일반안건 승인)
- '15. 12. 31.: 중기청 해제 및 지정 신청
- '16. 2.~3.: 중기청 안전상정 및 승인

5. 검토의견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및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특구의 지정 및 신청 시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향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계획은 우리 군의 지역특화 요소인 온천, 청정산림, 산양삼, 창포, 오미자, 약용작물 등 농·특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하여 힐빙 건강도시 기반조성으로 한 특구지정으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함.
- 3개추진과제 18개 특화사업인 ① 향노화휴양체험거점화사업 (5개특화), ②향노화생산유통기반구축(5개특화), ③건강도시 거창브랜드강화(8개특화)에 대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 규제특례를 받기 위한 것으로
- 특구지정에 따른 폐지안공고, 주민공청회,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사항

□ 추진과제별 현황(특화사업별)

| 추진과제 | 특화사업 | 위 치 | 필지수 | 면적(m ²) |
|------------------------------------|--------------------------|-------------------|-------|---------------------|
| 합 계 | | | 1,444 | 8,076,105 |
| 항노화 휴양체험 거점화 사업 (5) | 소 계 | | 269 | 2,207,435 |
| | 가조은천 관광지 운영 | 가조면 일부리 1300일원 | 137 | 230,674 |
| | 항 노화 힐링랜드 조성·운영 | 가조면 수월리 산19 일원 | 8 | 979,276 |
| | 거창 창포원 조성·운영 | 남상면 대신리 103 일원 | 101 | 424,819 |
| | 친환경대중골프장 운영 | 가조면 석강리 산번지 일원 | 23 | 572,666 |
| | 천문우주 문화도시 육성 | 전 읍면 | - | - |
| 항노화 생산·유통 기반구축 (5) | 소 계 | | 941 | 2,369,689 |
| | 가능성 건강약초산업 육성 | 고제면 개명리 2025-6 일원 | 939 | 2,359,355 |
| | 거합산 항노화약용식물 상품화지원 | 거창읍 대평리 1347 | 1 | 4,770 |
| |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운영 | 거창읍 대평리 1362 | 1 | 7,289 |
| | 감동 스토리 있는 음식점 운영 | 전 읍면 | - | - |
| | 맞춤형 마을 만들기 | 전 읍면 | - | - |
| 「건강도시 거창」 브랜드 강화 (8) | 소 계 | | 234 | 3,497,256 |
| | 『내일의 건강도시 거창』기반조성 | 전 읍면 | - | - |
| |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 거창읍 양평리 1160일원 | 11 | 206,049 |
| |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만들기 | 전 읍면 | - | - |
| | 거열성 및 군립공원 군민산책코스 운영 | 거창읍 상림리 산45-1일원 | 214 | 3,271,292 |
| | 아름 1004 운동 | 전 읍면 | - | - |
| | 거창국제연극제 | 위천면 황산리 758 일원 | 9 | 19,915 |
| | 거창한머당대축제 | 거창읍 양평리 1141일원 | (11) | (206,049) |
| | 거창 韓 전국산행대회 | 전 읍면 | - | - |

※ ()는 특구중복: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사업과 동일위치

□ 재원별 소요예산(총 사업비 697.3억원)

| 추진과제 | 특화사업 | 사업기간 | 기투자 (억원) | 소요재원(억원) | | | | | |
|----------------------------------|-----------------------------|---------|-------------|----------|-------|------|-------|------|------|
| | | | | 계 | 국 | 도 | 군 | 기금 | 기타 |
| 합 계 | | - | 934.6 | 697.3 | 234.0 | 63.1 | 286.6 | 86.2 | 27.5 |
| 항노화 휴양체험 거점화 사업 (5) | 소 계 | - | 786.4 | 263.3 | 77.2 | 17.3 | 82.6 | 86.2 | 0.0 |
| | 가조은천 관광지 운영 | `16~`20 | 221.4 | 11.0 | 5.0 | 1.5 | 4.5 | 0.0 | 0.0 |
| | 항 노화 힐링랜드 조성운영 | `16~`20 | 14.0 | 98.0 | 48.1 | 14.3 | 35.6 | 0.0 | 0.0 |
| | 거창 차포원 조성운영 | `16~`20 | 142.4 | 80.3 | 24.1 | 1.5 | 42.5 | 12.2 | 0.0 |
| | 친환경대중골프장 운영 | `16~`20 | 278.6 | 74.0 | 0.0 | 0.0 | 0.0 | 74.0 | 0.0 |
| | 천문우주 문화도시 육성 | `16~`20 | 130.1 | 0.0 | 0.0 | 0.0 | 0.0 | 0.0 | 0.0 |
| 항노화 생산·유통 기반구축 (5) | 소 계 | - | 108.4 | 100.1 | 25.3 | 9.2 | 44.6 | 0.0 | 21.0 |
| | 가능성 건강약초산업 육성 | `16~`20 | 58.1 | 42.0 | 0.0 | 6.0 | 15.0 | 0.0 | 21.0 |
| | 거함산 항노화약용식물 상품화지원 | `16~`20 | 13.5 | 18.1 | 12.9 | 1.6 | 3.6 | 0.0 | 0.0 |
| |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운영 | `16~`20 | 25.0 | 3.6 | 0.9 | 0.0 | 2.8 | 0.0 | 0.0 |
| | 감동 스토리 있는 음식점 운영 | `16~`20 | 0.0 | 1.0 | 1.0 | 0.0 | 0.0 | 0.0 | 0.0 |
| | 맞춤형 마을 만들기 | `16~`20 | 11.8 | 35.4 | 10.5 | 1.6 | 23.2 | 0.0 | 0.0 |
| 「건강도시 거창」 브랜드 강화 (8) | 소 계 | - | 39.8 | 334.0 | 131.5 | 36.6 | 159.4 | 0.0 | 6.5 |
| | 『내일의 건강도시 거창』기반조성 | `16~`20 | 3.0 | 5.2 | 2.5 | 1.3 | 1.4 | 0.0 | 0.0 |
| |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 `16~`20 | 1.0 | 148.8 | 60.0 | 18.0 | 70.8 | 0.0 | 0.0 |
| |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만들기 | `16~`20 | 9.7 | 5.0 | 0.0 | 0.0 | 5.0 | 0.0 | 0.0 |
| | 거열성 및 군립공원 군민산책 코스 운영 | `16~`20 | 5.0 | 70.0 | 49.0 | 7.4 | 13.6 | 0.0 | 0.0 |
| | 아림1004 운동 | `16~`20 | 0.6 | 1.4 | 0.0 | 0.0 | 1.4 | 0.0 | 0.0 |
| | 거창국제연극제 | `16~`20 | 9.4 | 51.5 | 20.0 | 10.0 | 15.0 | 0.0 | 6.5 |
| | 거창한마당대축제 | `16~`20 | 10.0 | 49.8 | 0.0 | 0.0 | 49.8 | 0.0 | 0.0 |
| | 거창 韓 전국산행대회 | `16~`20 | 1.2 | 2.4 | 0.0 | 0.0 | 2.4 | 0.0 | 0.0 |

□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 구분 | 규제특례사항 | 필요성 | 적용범위 | 세부사업명 |
|----------------|---------------------------------|---|---|--|
| 일반 규제 특례 | 제26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노화 약용식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기준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노화 약용식물, 건강 약초 재배 농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성 건강약초 산업 육성 거함산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지원 |
| | 제36조의13 (지방재정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투자사업이 포함된 특화사업 추진시 중복된 행정절차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사업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 스포츠센터 건강프로그램운영 및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
| | 제33조 (도로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점용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행사시 축제 안내 간판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국제연극제 거창한마당 대축제 |
| | 제22조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행사의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도로통행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행사 구간의 차량 통행 금지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국제연극제 거창한마당 대축제 |
| | 제23조 제1항제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의 표시 기준 완화(조례로 별도로 정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지역내 홍보를 위한 지주 이용간판 및 선전탑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국제연극제 거창한마당 대축제 |
| 권한 이양 특례 | 제43조 제1항 (식품위생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의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타 지역제품과 차별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 항노화 약용식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표시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성 건강약초 산업 육성 거함산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지원 감동 스토리 있는 음식점 운영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6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구계획안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 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추가되는 특례조치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3장제2절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 주민 공청회 개최 사진

(붙임참조 4)



○ 주민공청회 시 최종승 문화관광과장 설명



○ 주민공청회 시 용역회사 ppt 설명